

서울시보

서울시 홈페이지 | www.seoul.go.kr

제3098호 2012. 03. 20.(화)

■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희망서울
만약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



봄별 나들이

기관의 장		공	람								
선	람										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조례]

제5280호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

자 치 법 규

[조례]

◆ 서울특별시조례 제5280호

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
2012년 3월 20일

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또한, 교육원이 위치한 행정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에게는 25%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이 위치한 행정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에게 2013년 9월 1일부터 교통문화교육원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25%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으로 생활에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배려하는 등 주민복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교통문화교육원이 위치한 행정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에 대해 25%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3항)

